

수원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나29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나2977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1045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기(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24. 5. 3.

판결선고 2024. 5. 3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1045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221,879,6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11. 8.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63,895,0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11. 8.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57,984,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11. 8.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163,895,0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11. 8.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67,122,8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11. 8.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금액 221,879,628원(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163,895,038원(= ① 2015. 1. 8.부터 2017. 4. 10.까지 이체된 96,772,171원 + ② 2017. 5. 4.부터 2018. 3. 6.까지 이체된 67,122,867원)을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예비적으로는 피고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②항의 67,122,867원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2)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 2면 마지막 행부터 3면 9행까지, 3면 10행의 “(2)”, 3면 19행부터 4면 4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 7면 11행부터 8면 1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가 직접 또는 위탁관리업자를 통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이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분양자에 그대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관리단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10. 31.자 2023마5935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43, 44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B가 이 사건 건물 관리비를 E 명의 계좌로 입금 받다가 2015. 2. 27. 단체명을 ‘A관리단’으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2015. 3. 3. 위 관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이후로는 위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 받은 사실, ‘A관리단’ 명의 계좌에서 2017. 5. 4.부터 2018. 3. 6.까지 피고 C 명의 금융계좌로 222,863,190원이 이체되었고, 그중 상당한 금액이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하 그중 원고가 임의 사용을 주장하는 67,122,867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를 원고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B는 분양자인 소회 회사의 위임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 ‘A관리단’ 명의로 고유번호증과 계좌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회 회사가 피고 B를 통하여 위 계좌로 입금 받은 관리비는 소회 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관리단집회가 2018. 3. 23.에 이르러 최초로 개최됨에 따라 비로소 원고의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2017. 5. 4.부터 2018. 3. 6.까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징수된 관리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소외 회사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이체행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권리는 손해를 입은 소외 회사가 가지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장지용, 판사 류희상

1) 항소장에 피항소인이 피고 B로 되어 있고, 항소취지가 피고 C에 대한 67,122,867원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후에 제출한 서면과 제1심 청구취지를 고려하여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

2) 원고는 불복 대상 청구의 특징을 추후로 미루다가 2024. 5. 1.자 준비서면 4면 이하에서 2017. 5. 4.부터 2018.3. 6.까지 이체된 67,122,867원에 관한 손해배상금 청구와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다투는 취지임을 밝혔다.